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구입약가 확인제도 안내 및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업무매뉴얼 (요양기관용)

Ver.1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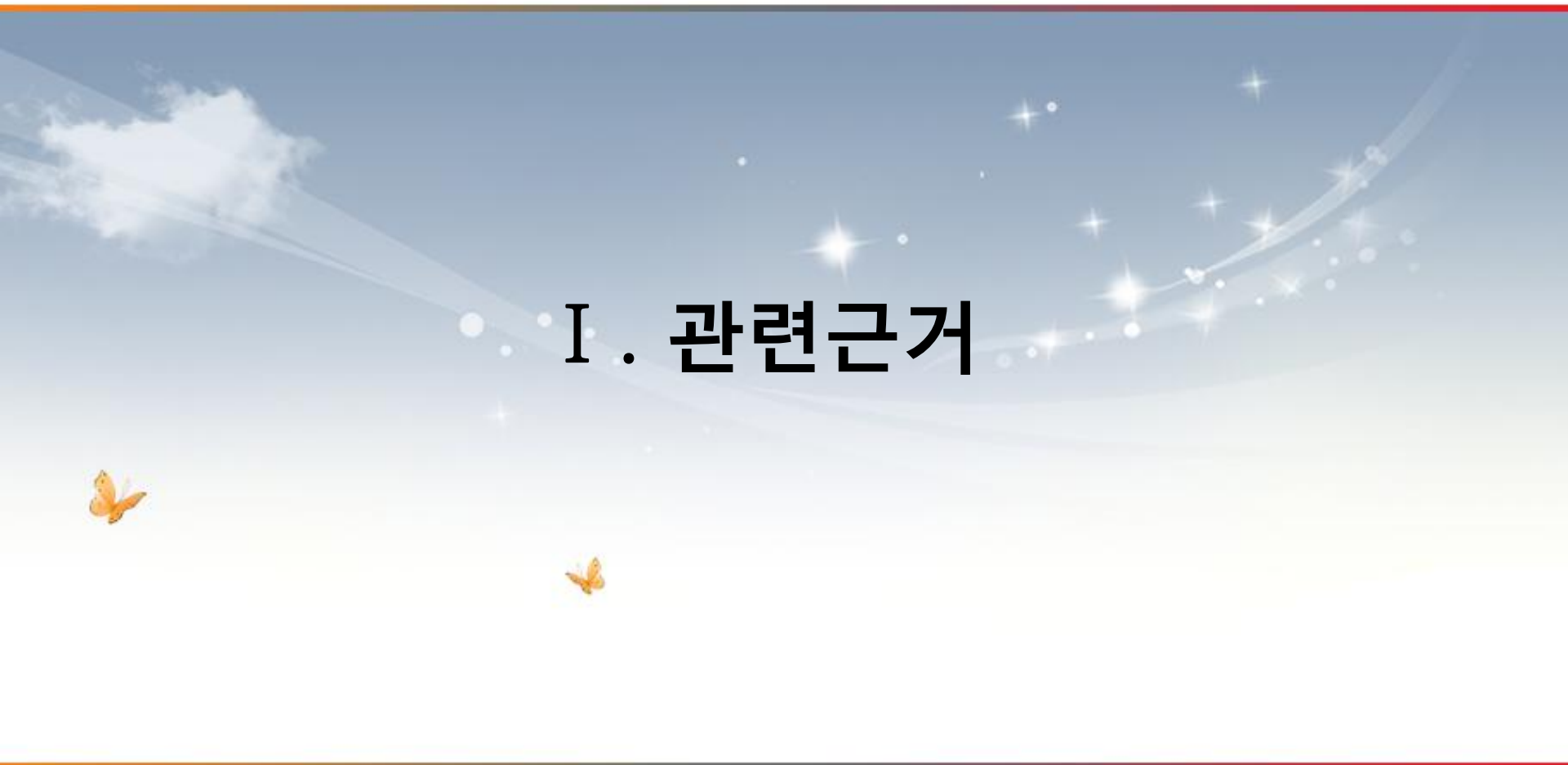


I. 관련근거

II. 구입약가 확인업무 개요

III.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업무매뉴얼

IV. 질의 · 응답(Q & A)



I . 관련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 (구입약가의 확인)

- 심평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공급 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 '10.11.5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심평원장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5호, '10.6.8



Ⅱ. 구입약가 확인업무 개요



● 도입배경

- 약제상한차액 추가 지급에 따라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결정의 정확성** 요구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 폐지**
-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지 사후 확인** 필요

● 구입약가 확인이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심사 후)**
 - **약사법령에 따른 공급내역(공급분기 가중평균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한 결과, 구입약가 확인 필요 건(상이건 등)에 대해 점검·확인**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확보

-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 확정 →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정산
-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약제 구입내역 확인을 통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

●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

- 구입약가 확인과정을 통한 구입약가 산정기준 이해 및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

●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 요양기관 청구 약제비의 정확성 확보에 따른 약제상한금액 조정 근거 마련

정기확인(서면확인)

- 분기단위(3개월)로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제출** 받아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확인
- 확인방법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현지확인

- 요양기관이 ①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②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③ 약제 구입 관련 부당한 사실의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확인된 경우 등 실시

구입약가 확인방법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 위치 : 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구입약가 확인주기

- 확인주기 : **3개월 간격 Rolling**

- 단, 최초 1차수는 5개월('10.10~'11.2) 접수분 확인 및 최초실시연도는 2개월 간격

- 확인대상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진료분 & 접수분 (**2010.10월~**)

구입약가 확인대상

-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 비교 상이 건 등**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통해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 확인내용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 확인**
- 약제별 구입내역 관련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수량, 금액, 단가** 확인(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구입약가 확인절차

심평원

- 요양기관 구입약제 확인요청 통보
- 웹 메일, 웹 팩스
- 대상 : 요양기관 청구 단가와 공급분기 가중 평균가 상이 약제 등

요양기관

- 구입약가 확인 및 증빙 자료 제출
- 제출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 제출기한
- 1차 10일(2차 4일)

심평원

- 접수마감
- **구입약가 점검 및 확정** (요양기관 증빙자료 및 공급내역 등 활용)

요양기관

- 확정된 구입약가 조회
- 확인방법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 **통보방법**

- **통보방법 : 웹 메일 및 웹 팩스** 통보 (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 지원별 실시)
 - 정기적인 업무이며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점 고려 **가능한 서면 통보는 지양 예정**
 - 웹 팩스는 팩스번호가 확보된 요양기관 우선 적용
- * '알림서비스' 활용 예정

● **자료 확인 및 제출 기한**

- **1차 통보 : 10일**
- **2차 통보 : 4일**
 -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통보 기한 내 자료제출 불가능한 경우 등 고려
- **추가 통보 : 3일** (구입약가 검증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약제별 요청)

☞ 2차 통보 처리기한 종료 시점에서 **'접수 마감'** (구입약가 확인 불가)

* 알림 서비스 : 심평원 메신저 서비스로 메시지 도착시 확인 창 생성.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알림 서비스' 다운로드 받아 실행

● 증빙자료 첨부기준

■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
 - * 최초 구입약제도 동일 적용
- 청구단가는 있으나 공급신고내역이 없어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없는 약제
- 추가확인 통보 약제

■ 증빙자료 미첨부

- 상한가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 등 기타 불일치 약제

● 증빙자료 안내

-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약제(단가변경)
 - 재고량 확인서(기관장 직인 날인), 반품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
- 처음 구입한 약제
 - 요양기관의 최근 1년간 청구 및 구입한 약제 품목 리스트(최초구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기타 증빙서류
 - 거래계약서(계약체결일, 계약 약제품목, 계약단가 등)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거래일자, 거래단가, 거래 약제품목 등)

●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정산

- 구입약가 청구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정산 및 환수

● 구입약가 확인 업무 거부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

-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 등 의뢰
- 해당 요양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심사업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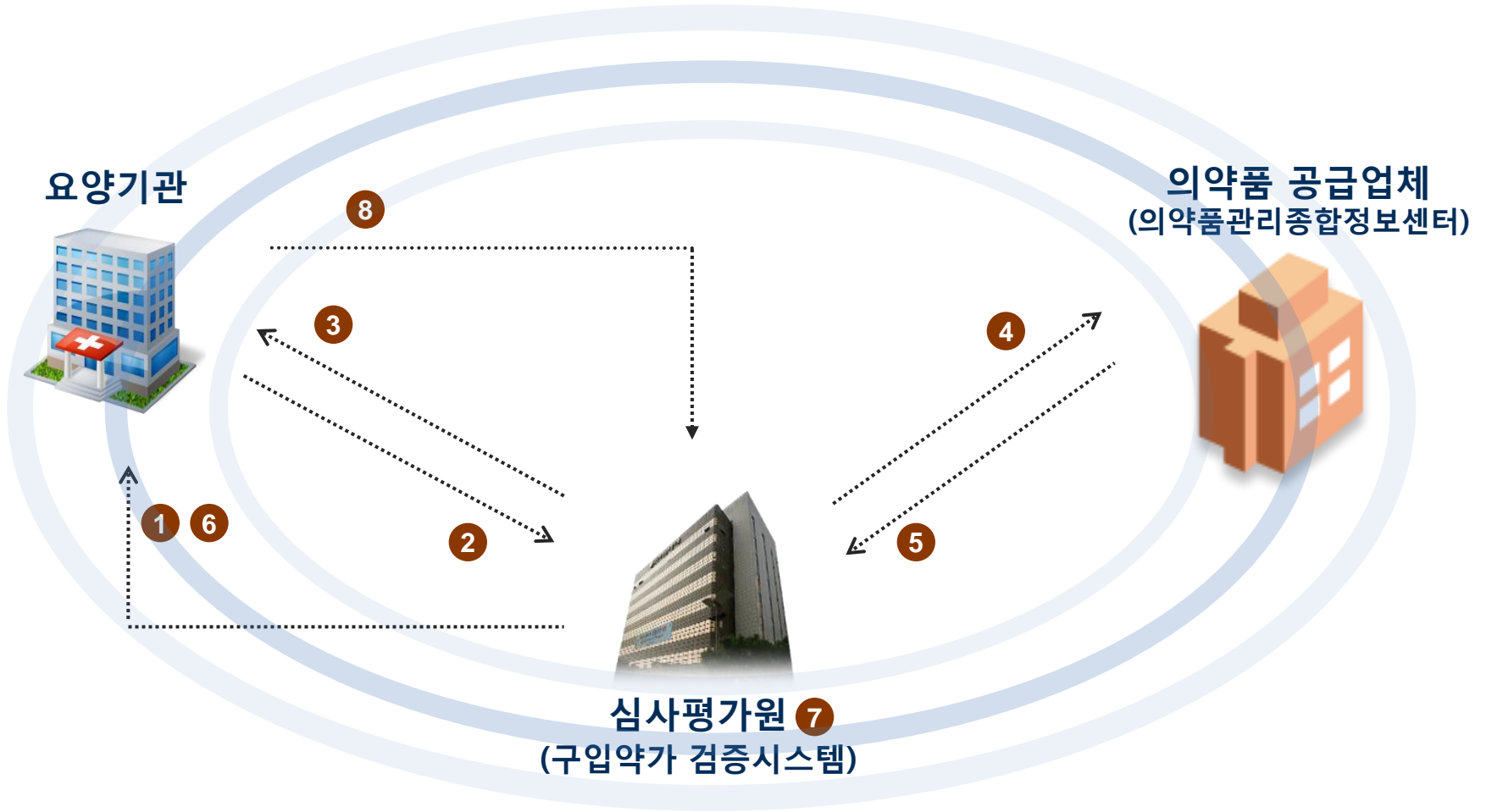
● 약가 사후관리

- 구입약가 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



Ⅲ.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업무매뉴얼





① 구입약가 확인 1차 및 2차 통보

④ 공급내역 2차 확인(공급신고 착오건 등)

⑦ 구입약가 검증 및 확정

② 구입약가 점검 및 제출

⑤ 공급내역 확인결과 통보

⑧ 확정 구입약가 조회(웹 조회)

③ 접수마감(요양기관 자료입력 불가)

⑥ 구입약가 추가확인 통보(필요시)

2.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접속 경로



1. HIRA 로고

2. 심사정보

3. 신청 및 자료제출

STEP 01 현황신고 절차

1. 현황신고

2. 신청 및 자료제출

3. 진료비 청구

4. 진행과정 확인

5. 단순청구유류 수정

6. 재심사조정청구 & 이의신청

7. 평가

현재나 함께합니다. 2011. 4. 25 월요일

AM 09:18 PM

공인인증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급여기준 알람방

자료실 정보방

요양기관 정보교육

진료비 전자청구

DUR 정보조회

적정급여 자율개선택

평가 결과조회

요양기관 추천컨텐츠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해당 페이지는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초기 화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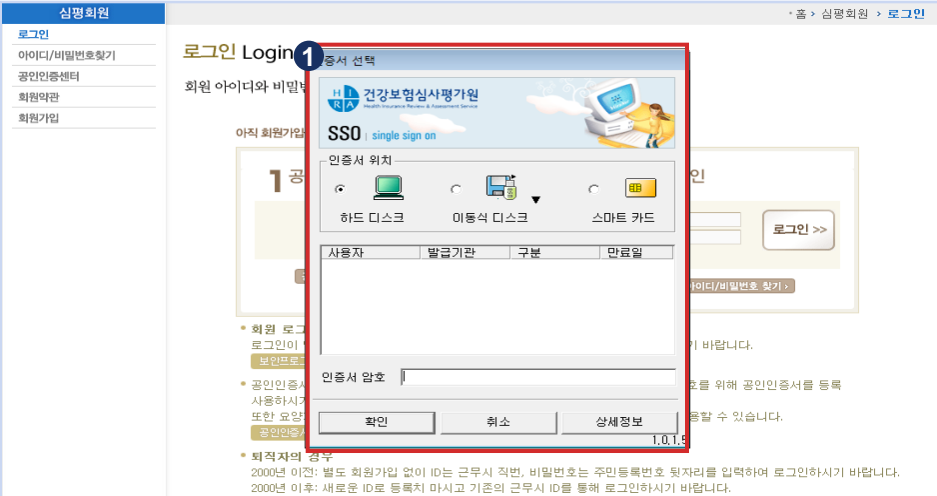
1. 요양기관업무포탈 주소 : biz.hira.or.kr
2. 심사정보 : 구입약가 확인 안내 (개요, 법적 근거, 구입약가 확인 업무 절차 및 방법, 유형별 증빙자료 첨부 안내 등)
3.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을 클릭하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으로 이동

3.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해당 페이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화면임

1. 회원 미가입 및 공인인증서 미발급 요양기관은 회원가입 및 공인 인증 신청 및 발급
 2. 회원이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공인인증 신청 및 발급
- * 회원이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요양기관 접수화면(1)

구입약가 확인

1. 연도 2011 2. 차수 8 3. 진행구분 - 전체 -

4. 구입약가 확인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마감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시작월	종료월
2011	8	1051	작성중	20110525						20110526	201010	201103

5. 구입약가 확인목록

총: 1051 건

출력수: 10

순번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1	640000090	디고산정(디곡신)	작성 중
2	640000210	루프린주3.75mg(초산류프로렐린)	작성 중
3	640000310	마디판정 10밀리그램(마니디핀염산염)	작성 중
4	640000320	마디판정(마니디핀염산염) 20밀리그램	작성 중
5	640000480	비난정(세프독심프록세틸)	작성 중
6	640000520	베이손정0.2밀리그램(보글리보스)	작성 중
7	640000530	베이손정0.3밀리그램(보글리보스)	작성 중
8	640000680	사이톨신주200밀리리터(사프로플록사신)	작성 중
9	640000920	솔레톤정(잘토프로펜)	작성 중
10	640001200	씨제이20%만니톨주사액	작성 중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해당 페이지는 요양기관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구입약가 확인대상 약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임

- 연도 : 현재연도가 자동으로 조회됨
- 차수 : 현재연도에 생성된 차수들이 목록으로 조회됨
- 진행구분 : 작성중, 작성완료, 처리중, 처리완료로 구분됨
 [작성중] : 요양기관이 구입약가를 확인 중인 경우 작성중으로 생성
 [작성완료] : 약제별 구입약가를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생성
 [처리중] : 심평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중일 때 생성
 [처리완료] : 심평원 담당자가 구입약가 확인업무 처리 완료시점에서 생성.
- 구입약가 확인현황
 - 대상품목수: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대상 약제품목수. 대상품목수를 클릭하면 5. 구입약가 확인목록이 조회됨
 - 진행구분 : 3.과 동일
 - 문서 시행 날짜에 맞춰 1차통보일 및 2차통보일 생성
 - 접수마감일은 2차통보 처리기한 종료시점에서 생성
 - 추가통보문서 시행 날짜에 맞춰 추가통보일 생성
 - 담당자 및 연락처는 요양기관 담당자를 의미
 - 처리기한은 1차, 2차, 추가통보 제출기한에 맞추어 자동 생성됨 (1차통보 10일, 2차통보 4일, 추가통보 3일)
 - 시작월 및 종료월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청구시작 및 종료월을 의미함
- 요양기관이 확인해야 할 구입약가 확인목록이 조회

5. 요양기관 접수화면(2)

구입약가 확인

연도 2011 | 차수 8 | 진행구분 -전체-

구입약가 확인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마감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시작일	종료일
2011	8	1051	작성중	20110525						20110526	201010	201103

1. 구입약가 확인목록

2. 진행구분 -전체-

3. 출력수 10

4. 조회

5. 약가코드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640000090	디고신정(디곡신)	작성 중
640000210	루프린주3.75mg(초산류프로렐린)	작성 중
640000310	마디핀정 10밀리그램(마니디핀염산염)	작성 중
640000320	마디핀정(마니디핀염산염) 20밀리그램	작성 중
640000480	비난정(세프로독심프록세틸)	작성 중
640000520	베이슨정0.2밀리그램(보글리보스)	작성 중
640000530	베이슨정0.3밀리그램(보글리보스)	작성 중
640000680	사이툼신주200밀리리터(사프로롤록사신)	작성 중
640000920	솔레톤정(갈토프로판)	작성 중
640001200	씨제이20%만니톨주사액	작성 중

6. 진행구분

7. 최종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해당 페이지는 요양기관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구입약가 확인대상 약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임

1. 선택 : 약가코드와 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음
2. 진행구분의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음
 - 작성중, 작성완료, 추가요청 작성중, 추가요청 작성완료로 구분
3. 출력수를 선택하여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목록을 볼 것인가 결정
4. 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 구입약가의 확인목록을 볼 수 있음
5. 클릭시 해당 약제에 대한 상세화면으로 이동
6. 진행구분 항목의 상태에 따라 해당 약가의 상세화면이 바뀜
 - [작성중] → 상세화면
 - [작성완료] → 상세화면
 - [추가요청 작성 중] → 2차 접수 후 상세화면
 - [추가요청 작성완료] → 2차 접수 후 상세화면
7. 모든 약제에 대하여 작성완료가 되면 최종 제출함. (해당 요양기관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 버튼 누름)
8. 최종제출 클릭하면 담당자 정보입력 팝업 오픈
 - 필수 입력사항 :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8. 담당자정보입력

· 담당자	원빈	· 전화번호	02 - 1234 - 1234
· 팩스번호	02-1644-2000	· 휴대전화	010-9876-5432

확인 | 닫기

6. 상세화면 구성

구입약가 확인 인쇄 | 즐겨찾기 추가

1 청구현황

· 약가코드	64250360 (36100036)	오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가중평균가
· 품명	호의주(가벽세이트메실산업)	20101104	4,285	201034	4,282		
· 접수년월	201010 - 201103						

2 공급내역 가중평균가 = 공급금액 / (공급수량 * 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구입분기	환산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요양기관확인요 자료첨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1	3 태전약품판매(주)	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34	10	42	1,798,640	4,282	첨부파일

4 공급업체 신고자료

순번	판매처(사업자등록번호)	품명	판매일자	판매수량	환산규격	판매금액	판매단가
1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0701	10	10	428,700	42,870
2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0723	10	10	428,700	42,870
3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0802	12	10	514,440	42,870
4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0901	10	10	426,800	42,680

5 단가변경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은 상한금액 변동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단가가 변경되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구입단가 = 구입금액 / (구입수량 * 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품명	구입일자	환산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상한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접수메세지

7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요양기관의 특정 약제에 대한 상세처리화면으로 청구현황, 공급내역, 공급업체 신고자료, 단가변경, 접수메세지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약제에 대한 청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요양개시일자 : 분기별 해당 약제 사용 최초 진료개시일자
 - 진료월에 따른 약제 공급분기(단, 최초구입 및 단가변경 약제는 구입일로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요양개시일자에 따른 구입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1차 가중평균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 2차 가중평균가 : 공급업체 2차 확인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 최종 가중평균가 : 심평원 담당자가 요양기관 확인내역과 공급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최종 확정된 가중평균가
- 해당 약제에 대한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입처, 품명, 구입분기, 공급수량, 금액 단가 등 확인
- 구입처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한 공급업체 신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공급업체 상세 신고자료 목록
- 단가변경 목록화면
 - 「단가변경」과 「상한금액변동단가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가변경」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은 변경상한가 및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최초구입약제는 단가변경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해당 약제에 대한 접수메세지 메모 입력창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정보를 임시저장할 수 있음
목록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목록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

7. 상세화면 설명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요양기관의 특정 약제에 대한 상세처리화면으로 공급내역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약제에 대한 공급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음
 - 요양기관 수정시 수정수량, 금액을 입력하면 수정단가가 자동으로 생성됨
- 요양기관 확인결과는 공급신고맞음, 공급신고착오, 기타로 구분 됨
 - [공급신고 맞음] : 공급업체 신고내역이 맞는 경우
 - [공급신고 착오] : 공급업체 신고내역에 착오가 있는 경우
 - [기타] : 요양기관 착오로 구입내역이 없음에도 청구한 경우 (모두 "0"으로 입력, 공급내역 미매칭건)
- 공급내역 미매칭건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나머지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함)
- 행추가 및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내역을 등록 및 삭제할 있음
- 행추가 건에 대한 품명 클릭시 팝업 오픈, 해당 품명을 클릭하면 품명에 대한 정보 및 환산규격이 자동으로 입력됨
- 품명, 환산규격 가져오기 팝업
- 행추가 버튼을 눌러 단가변경 내역을 등록할 수 있으며 행 삭제 버튼을 눌러 등록된 단가변경 내역을 삭제할 수 있음
 - 수량, 금액을 입력하면 단가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 첨부버튼을 클릭시 9.의 팝업창 오픈
- 첨부파일을 등록 및 삭제할 수 있음

구입약가 확인

입내 | 즐겨찾기 추가

○ 청구현황

· 약가코드	642503960 (35100036)	요양계시일자	청구일자	공급분기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가중평균가
· 품명	호의(주)(가벽세이티브레실산염)		20101104	4,285	201034	4,282	
· 접수연월	201010 - 201103						

○ 공급내역 ※ 최종가중평균가 = 공급금액/(공급수량*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구입분기	환산규격	공급수량 수정수량	공급금액 수정금액	공급단가 수정단가	요양기관확인결과	첨부파일
1	태전약품판매(주)	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34	10	42	1,798,640	4,282		첨부파일

○ 공급업체 신고자료

순번	판매처(사업자등록번호)	품명	판매일자	판매수량	환산규격	판매금액	판매단가
1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0701	10	10	428,700	42,870
2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환산규격가져오기			10	428,700	42,870
3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10	514,440	42,870
4	태전약품판매(주)(4018100987)				10	426,800	42,680

○ 품명, 환산규격 가져오기 팝업

품명	환산규격	표준코드	대표코드
호의(好意)주	1	8806425039609	8806425039609
호의(好意)주	1	8806425039616	8806425039609
호의(好意)주	5	8806425039623	8806425039609
호의(好意)주	10	8806425039630	8806425039609
호의(好意)주	30	8806425039647	8806425039609

○ 단가변경

※ 1.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은 상한금액 변동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단가가 변경되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 2.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환산규격)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품명	구입일자	환산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상한가	변경일	파일첨부
경	태전약품판매	401-81-00987	호의(好意)주	2010-11-01	10	10	100,000	1,000			첨부

○ 파일첨부

순번	파일명	크기

8. 최종제출 완료 및 접수마감 후 화면

·연도 2011 ·차수 1 ·진행구분 -전체-

구입약가 확인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투표일	2차투표일	접수마감일	추가투표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시각질	종료일
2011	1	7	처리중	20110531	20110601					20110531	201010	201102

1 신청/제출완료

구입약가 확인목록 총: 7 건

순번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1	644903910	콤비플렉스제리우	처리 중
2	644911930	하트만약스틱	처리 중
3	645301960	파노린연질합성(파이드론산나트륨)	처리 중
4	653600380	미카르디스틀러스정 40/12.5밀리그램	처리 중
5	663601290	아페손정(겔산에페리손)(수용형:PRIME-APESONETab)	처리 중
6	670102030	팜피스정(팜시클로바)	처리 중
7	670103140	알지엑스정(알긴산나트륨)	처리 중

최종제출

·연도 2011 ·차수 1 ·진행구분 -전체-

구입약가 확인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투표일	2차투표일	접수마감일	추가투표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시각질	종료일
2011	1	7	처리중	20110531	20110601					20110531	201010	201102

2 처리중

구입약가 확인목록 총: 7 건

순번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1	644903910	콤비플렉스제리우	처리 중
2	644911930	하트만약스틱	처리 중
3	645301960	파노린연질합성(파이드론산나트륨)	처리 중
4	653600380	미카르디스틀러스정 40/12.5밀리그램	처리 중
5	663601290	아페손정(겔산에페리손)(수용형:PRIME-APESONETab)	처리 중
6	670102030	팜피스정(팜시클로바)	처리 중
7	670103140	알지엑스정(알긴산나트륨)	처리 중

최종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최종 제출 완료 및 심평원에서 접수마감 후 진행상태를 볼 수 있음

1. 심평원에 최종 제출완료하면 "신청/제출완료"로 생성
2. 심평원이 접수마감하면 "처리중"으로 생성

9. 추가요청건 접수화면

· 연도 · 차수 · 진행구분

● 구입약가 확인 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마감	추가통보일	연락처	처리기한
2011	2	5	처리중	2011-06-01	2011-06-14	2011-06-21	2011-07-05	02-1234-1234	2011-07-08
2011	1	10	처리중	2011-03-01		2011-03-16		02-1234-5678	2011-03-11

● 구입약가 확인목록

총: 10 건

순번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1	644904070	트리젤주(메트로니다졸)(수출명:Tridelinei.CHOONGWAETRIZELEini.)	처리 중
2	644904470	하트만덱스액	처리 중
3	644911930	하트만덱스액	처리 중
4	645201490	슈넬세프트리악손주그람(주사용세프트리악손나트륨)	처리 중
5	653000980	비스분정(알렌드론산나트륨)	처리 중
6	653800150	다이뉴에미치알정(치욕트산)	추가요청
7	657801220	아네졸주사12밀리리터(프로포폴)(수출명:하나프로포폴주사프로피드프로플렌트리밤)	처리 중
8	665502530	유니온메토카르비롤주 500밀리그램	추가요청
9	671800890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수출명:메엑스-엘메엑스-아이)	처리 중
10	678000090	옥시코틴서방정10mg	처리 중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에 추가확인요청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추가요청일자 및 추가요청약제를 확인할 수 있음

1. 추가요청시 추가통보일 생성
- 처리기한은 통보 익일부터 3일
2. 추가확인 대상약제건에 대하여 "추가요청" 생성

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업무담당자 ?도움말 인쇄

[목록 >](#)

○ 청구현황

약가코드	641602470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가중평균가
품명	티로파정(염산티로프라이드)	20110122	241	201034	246		
접수년월	201102 - 201103						

○ 공급내역 ※ 최종가중평균가 = 공급금액/(공급수량*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구입 분기	1차 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환산 규격	공급 수량	공급 단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업체 확인결과	처리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1	주부림약품	302-81-13175	티로파정(염산티로프라이드)	201034	6	147,600	246	6	147,600	246	3	100	2	공급신고착오	공급업체 확인결과	4
					6	144,600	241				5	6	첨부파일	첨부파일		

· 접수해제지

7 [저장](#) [목록](#)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추가확인요청 약제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1. 1차 통보시 요양기관이 수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2. 1차 통보시 요양기관 확인결과임
3. 공급업체가 2차 확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4. 공급업체가 2차 확인결과임
5. 요양기관 1차 확인내역 및 공급업체 2차 확인내역을 참고하여
요양기관이 재확인한 최종 수정 내용 입력
6. 추가요청건의 경우 반드시 첨부파일 입력
7.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정보 저장 후 접수화면으로 가서
최종제출하면 됨

11. 결과확인 - 접수화면

구입약가 확인 인쇄 | 즐겨찾기 추가

·연도 2011 ·차수 1 ·진행구분 -전체-

[조회]

● 구입약가 확인현황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미감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시작월	종료월
2011	1	5	처리완료	20110606	20110603					20110616	201010	201103

● 구입약가 확인목록 총: 5 건

-선택- [] 진행구분 [] 출력수 10 [] [조회]

순번	약가코드	품명	진행구분
1	655900080	네오시드정(레보설피리드)(수출명:LEVOMOTITTablet)	요양기관착오
2	655900820	레녹사신정(레보플록사신)	공급신고착오
3	655900970	록프라정(록소프로렌나트륨)	공급신고착오
4	655901470	세파콜칼셀250밀리그램(세파콜러수화물)(수출명:셀콜라칼셀250밀리그램)	단가변경
5	655902680	티로진정(염산티로프라미드)	공급신고착오

1

[최종제출]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구입약가 확인업무가 모두 끝나면 요양기관은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음**

1. 구입약가 확인업무가 모두 끝나면 진행구분이 처리완료로 생성됨
2. 진행구분란에 최종 결과값 조회됨
 [요양기관 착오]:업체별 공급내역이 모두 맞는 경우 해당
 [공급신고 착오]:업체별 공급내역 중 하나 이상 공급신고 착오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단가변경]:단가변경약제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 미확인]:요양기관 및 공급업체 모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두 개 이상 경우의 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가변경 > 공급신고 착오 > 요양기관 착오 순으로 적용

12. 결과확인 - 상세화면

○ 청구현황

약기코드	640002990 (38203561)	요양계시일자	청구일자	공급분기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가중평균가
품명	에포카인프리필드주2000유니트/0.5ml	20101001	12,409	201024	12,598	12,409	12,409
접수년월	201010 - 201103	20101101	12,409	201034	12,598		12,598

○ 공급내역 * 최종가중평균가 = 공급금액/(공급수량*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구입 단가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공급분기	최종가중평균가	최종가중평균가	처리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1	디케이알	608-17-86789	에포카인프리필드0.5ml	201024	160	12,094,080	12,598	50	3,722,700	12,409	6	50	3,722,700	12,409	공급신고착오 첨부파일
					50	3,722,700	12,409								
2	디케이알	608-17-86789	에포카인프리필드0.5ml	201034	185	12,472,000	12,598				6	185	12,472,000	12,598	공급신고맞음 첨부파일

-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은 상한금액 변동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단가가 변경되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환산규격)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단가변경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구입일자	환산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상한가	변경일	처리결과
1	단가변경	드림피마	120-91-52892	세파를칼슘(50밀리그램(세파를러수화물))	2010-11-08	100	100	4,190,000	418			단가변경인정 첨부파일

접수메세지

처리결과
단가변경

기타

▶ 요양기관업무포탈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구입약가 확인업무가 모두 끝나면 요양기관은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심평원 담당자가 최종 확정된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심평원 담당자가 최종 확정된 수량, 금액, 단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공급신고 맞음, 공급신고 착오, 기타로 구분
- 단가변경 약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단가변경 인정, 단가변경 착오, 단가변경 불인정으로 구분
- 약제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음



IV. 질의 · 응답 (Q&A)

Q1 구입약가 확인대상 약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 상이약제, 가중평균가 미매칭 약제 등이 주 확인대상이 됨

Q2 구입약가 미확인 기관이나 거부기관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구입약가 미확인 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처리되어 또한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3 구입약가 확인업무는 향후 어떤 업무와 연계가 되나요?

A3 청구착오 약제의 경우 사후 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실거래가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의 근거가 됨

Q4

처리기간(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A4

1차 통보 후 10일(2차 통보 후 4일) 이내에 구입약가를 점검·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통보의 경우는 3일 이내에 확인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종료시점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기한 연장

Q5

증빙자료 첨부시 스캐너 등 관련 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A5

부득이 검증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사본을 관할 본, 지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심평원 담당자가 확인하여 증빙자료 입력 예정

Q6

구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떤 경우에 첨부해야 하나요?

A6

처음 구입한 약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가중평균가격과 다른 단가로 구입한 약제
(단가 변경 약제), 추가확인통보 약제,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없는 약제 등

Q7 **최초구입약제와 단가변경약제는 청구현황의 공급분기가 어떻게 표시되나요?**

A7 최초구입약제와 단가변경약제는 구입일로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분기 가중평균가격 적용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입 월에 따른 공급분기를 적용함
(예, 2010년 9월 최초 구입 → 201034로 표시)

Q8 **수개월분을 한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현황의 공급분기가 어떻게 표시되나요?**

A8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를 보여줌

Q9 **구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어떤 경우에 첨부해야 하나요?**

A9 처음 구입한 약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가중평균가격과 다른 단가로 구입한 약제 (단가 변경 약제), 추가확인통보 약제,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없는 약제 등

Q10

단가변경약제와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약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0

적용기준은 동일(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하나 상한금액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약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한 상한금액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상한금액 변경일자 와 금액만 기재하여도 무방함

Q11

최초구입약제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11

최초구입약제는 단가변경에 준용하여 적용하므로 요양기관이 최초구입약제임을 입증해야 함. 즉, 단가변경입력란에서 단가변경을 선택하여 해당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함

Q12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A12

최종 확정 약가는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우편 통보는 하지 않음. 요양기관의 진행상태가 '처리완료'된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보시점으로부터 약 50~6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임직원은 “바른 심사 바른 평가” 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